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·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6급 1명)을 증원하고,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6급 2명)을 증원하며,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·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6급 2명)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병무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2. ~ 2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병역면탈 범죄 예방·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.

별표 3의 총계 “294”를 “296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90”을 “292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83”을 “285”로 한다.

별표 4의 총계 “1,632”를 “1,634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632”를 “1,634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621”을 “1,623”으로 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6]

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30조 관련)

1. 제3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6년 2월 28일)

총계	9
일반직 계	9
8급 이하	9

2. 제3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6년 2월 25일)

총계	1
일반직 계	1
9급	1

3. 제3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6년 2월 28일)

총계	2
일반직 계	2
6급 이하	2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한시정원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0조(한시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병역면탈 범죄 예방·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 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 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 속기관에 둔다.</u>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3]

병무청 공무원 정원표(제2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94</u>	<u>296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90</u>	<u>292</u>	+2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83</u>	<u>285</u>	+2
·	·	·	

[별표 4]

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632</u>	<u>1,634</u>	+2
일반직 계	<u>1,632</u>	<u>1,634</u>	+2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621</u>	<u>1,623</u>	+2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5